# Meta와 X의 불법성

2025. 4. 16(个)

법무법인 지향 (Jihyang Law Firm) 변호사 이 은 우

# Facebook, Instagram, X 이용자 개인정보 AI 학습 데이터 이용 특징

- 정의되지 않은 "인공지능 기술"에 사용
-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제한 없음
- "특정 목적"에는 제한이 없음
- 시간 제한 없는 개인정보 사용
-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가명화 없음
- 개인정보를 "제3자"에게 전달
-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, 동의자와 비동 의자(처리중지요구자)의 정보 분리 불 가능
- 개인정보는 처리 중지를 요청해도, 한 번 학습 개인정보로 이용되면 AI 시스 템에서 삭제되지 않음

# Meta (Facebook, Instagram) X는

이용자의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기로 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음.

• Meta의 주장 :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, 법적 근거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라 함.

• X의 주장 : 동의를 받지 않았고,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!

# 개인정보보호법위반

####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

"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(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)"

- Meta의 주장 :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, 법적 근거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라 함.
- X의 주장 : 동의를 받지 않았고,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!

## 정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음!

'**정당한 이익**'이 인정되기 위해서는

- (i) 합법적이어야 하고(lawful)
- (ii)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(clearly and precisely articulated)
- (iii) 실제적이고 현존하고, 추측에 의한 것은 안됨(real and present, and not speculative)

목적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.

Meta 및 X의 경우: 자신들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

- 'Al at Meta 개발 및 지원'
- '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'

즉, 이는 모든 종류의 AI 모델, 기술,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

다시 말하면,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

## 필요한 최소한에도 위반

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'필요한' 것이어야 하는데,

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처리 외에는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. 처리되는 개인정보는

"개인정보 최소화" 원칙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,

"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"으로 제한되어야 한다.

Meta 및 X의 경우: 아래의 갖가지 정보들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.

-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산한 정보
-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
-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까지

##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결코 우선하지 않음!

#### 정당한 이익이

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. 즉, 이익형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매우 광범위하고 또 민감한 SNS 상의 개인정보를 (적절한 고지와 동의 없이)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- AI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불충분
-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은 실로 방대하며,
-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.
- 휴면 상태로 있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
- 한번 AI 학습이 된 이후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

## 안전조치 의문

이익형량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음.

#### Meta 및 X의 경우:

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도 않다.

### 민감정보 적법처리

#### SNS에는

(정치적 성향,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병이나 성적 지향 등)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, 다른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도 있다.

민감정보의 경우

- **정당한 이익**에 근거한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,
-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.

#### SNS에서는

-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가 분리할 수 없이 섞여 있고,
- 동의자와 비동의자의 정보 역시 구분하기 힘든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민감정보에 대해서 분리, 제거하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

#### 한국의 이용자에게는

# 고지도

# 안해

#### Meta와 X는

위법하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.

#### 이용자는

고지 시점에 (사전 또는 사후)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는, 고지 이후 언제든지 관련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마저 (모르는 사이에) 박탈당한 것이다.

## 사후 처리정지권은 보장될까?

####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

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보장

#### Meta와 X는

현재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,

- 한글 버전에서 그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며,
- 해당 기능을 찾아 몇 단계 클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권한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다.
- 이용자가 법에 따라 처리정지권을 요구하면, 과연 사후 처리정지가 될까?

유럽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

## **NOYB**

# 선도적 대응

- 2007년 이후 수집한 이용자들의 공개 및 비공개 데이터를 'AI 기술'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Meta에 대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(GDPR)을 위반했다고 지적(2024년 6월 6일)하고 11개국(오스트리아, 벨기에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이탈리아, 아일랜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스페인)의 DPA(정보보호기관)에 긴급절차를 통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
- 또한 X에 대해서도 9개국(오스트리아, 벨기에, 프랑스, 그리스, 이탈리아, 아일랜드, 네덜란드, 폴란드, 스페인)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

## 해외 각 기응 대응

- 브라질 개인정보감독기구(ANPD)는 Meta에 AI학습중단명령(2024년7월) 이후 조건부(사용자에게 30일전 데이터처리사실과 거부권 통지) 허용
-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(DPC)는
  Meta에 대해 콘텐츠를 사용한 대형언어모델(LLM) 훈련연기를 요청,
  X와는 'Grok' 학습 목적의 데이터처리 중단 합의(2024년8월8일)
- 영국단체 Open Rights Group은 Meta를 신고(2024년7월15일)
  - UK's ICO(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)에서 조사중
-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(OPC)는 X를 조사(2025년2월2<mark>7일 보도)</mark>
  -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(PIPEDA) 위반 해당여부

감 사 합 니 다